

『2026년 상반기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용인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대 및 해외마케팅에 도움을 드리고자 2026년 상반기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2. 9.

용인특례시장

1. 모집 개요

- 지원대상 : 2026년 상반기(1.1.~6.30.)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개별 자격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용인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제조, 벤처 중소기업
 - ※ 공고일 이전 2026년 전시회(1월1일~)에 참가 완료한 업체도 소급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6. 2. 9.(월) ~ 2. 24.(화) 18:00 신청분 까지
- 모집규모 : 2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국내전시회 참가 소요비용 사후 지원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 VAT 지원 제외)
 - ※ 다음 페이지 "비용지원 가능 항목 및 불가능항목" 확인 必
 - 킨텍스 전시마케팅 교육 지원
- 선정기업 의무사항 * 추후 선발기업 대상 킨텍스 안내 예정
 - 전시마케팅 교육 : 연 1회 이상 참여 필수
 - ※ 연 1회 이상 교육 미참여 시, 보조금 환수
 - 성과관리 : 연 1회 이상 성과 취합 및 설문 참여 필수
- 지원기관 : 용인시
- 수행기관 : (주)킨텍스 * 킨텍스에서 개최되지 않는 전시회도 신청 가능합니다.

□ 비용지원 가능 항목 및 불가능 항목

<p>지원 가능 항목</p>	<p>① 부스 임차료 (조립부스, 독립부스 등) ② 부스 장치비 (전시회 참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치 및 부대시설 설치비용) * 전시주최자가 공급하는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전기·전화인터넷·급배수 등) ③ 홍보물 제작비 (해당 전시회 참가를 위한 홍보 책자, 영상물 제작 등) ※ [① → ② → ③ 순으로 비용 지원] ※ 지원항목별 증빙자료는 추후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컨텍스)</p>
<p>지원 불가능 항목</p>	<p>○ <u>지출비용 부가세(VAT)</u> ○ 전시회 간접비용 : 교통비, 체재비 등 ○ 전시물품 운송비 ○ 기념품 제작비 ○ <u>특히 각종 비품 구입비, 장치물 제작비 등 설치공사가 아닌 자산취득비적 성격의 비용 지출의 경우 장치비로 사용 불가</u> ○ 발생 수수료 :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의 수수료, 은행/카드사 송금·환전 수수료</p>

□ 지원제한 (**※ 신청 전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년 연속(2023~2025년) 용인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선정 기업
- 정부 · 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KOTRA 등)으로부터 동일한 전시회 참가비 등(참가비, 장치비, 홍보비 등 모든 비용지원 포함)을 지원받는 업체
 ※ 선정 기업은 수출바우처를 해당 전시회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용인 외 지역으로 진출한 경우
 (전시회 참가 후, 사후 교부신청서 제출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명 상 도소매, 유통업, 무역업만 존재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업체(완납 후 선정 가능)
- 타사/에이전트(대리점)/해외지점 · 법인 등의 명의사용 또는 타사와 공동참가한 경우
- 판촉전/개인 미술전/패션쇼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신청 전시회와 다른 전시회로 사후정산 신청한 경우
- 전시회 참가시 선정기업 명칭이 아닌 브랜드명 등으로 참가할 경우
 관련자료(상표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상호명이 부스명과 상이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 예정인 기업은 하반기에 별도 신청(6~7월 모집공고 예정) 하여야 하며, 상반기 선정 기업은 하반기 선정 제외
※ 하반기 전시회 대상기간 : 2026. 7. 1. 개최 ~ 12. 4. 까지 종료되는 전시회
- 2026년 용인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과 본 지원사업은 중복 선정이 불가하므로, 두 사업 모두 신청한 기업이 선정될 경우 택 1 하여야 함.
(선정 예정자 개별 연락)
- 공고일 이전 2026년 전시회(1월1일~)에 참가 완료한 업체도 소급 신청 가능
- 1개의 전시회만 신청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전시회를 신청할 수 없음.
- 참가비(부스비)가 전액 지원되는 전시회는 신청 불가
- 전시회 주최측의 개최 취소/연기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신청 전시회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전시회 개최일 전까지 상반기(2026. 6. 30.) 까지 개최되는 전시회로 1회에 한하여 변경 신청 가능함.
(※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업체별 사정에 따라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전시회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지원사업 참가 포기서를 제출해야 함.)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2. 9.(월) ~ 2. 24.(화) 18:00 신청분 까지

※ 2. 24.(화) 18시 이후에는 시스템상 [마감] 처리되어 신청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18:00 이전까지 '접수' 버튼 클릭 완료 (임시저장할 경우, 접수되지 않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아래 '제출서류목록' 제출 필수)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https://ybs.ypa.or.kr/portal.do>) 회원가입 후 신청

□ 제출 서류 목록 : **공고문 5페이지 [첨부] 확인 후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제출**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사업 신청 시 첨부파일에 첨부하여 제출)

3. 선정 및 결과 발표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 2024년 대비 2025년 수출 감소기업 가점 부여(+5점)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선정 기준
 - ① 2025년 용인시 국내·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비수혜 업체
 - ② 2025년 용인시 국내·해외 전시회 단체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 알리바바닷컴 입점 지원사업 비수혜 업체
 - ③ 최근 3년간(23~25) 용인시 통상지원사업 수혜 횟수가 더 적은 업체

□ 결과발표 : 2026. 3. 16.(월) 신청 기업에 이메일 개별 통보 예정

※ 신청서 상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되니 오기 여부를 제출 전 확인 바랍니다.

4. 지원금 지급 절차

□ 지급시기 : 선(先) 전시회 참가(비용 완납), 후(後) 지원금 교부

□ 교부 신청 방법

- ① 전시회 참가 후 3주 이내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참가기업→킨텍스)
 - ※ 추후 선발기업 대상 필수 제출 증빙서류 메일로 송부 예정
- ② 담당자 이메일 검토 후, 결격사유 없을 시 향후 절차 안내
- ③ 신청서 및 제출서류 원본 우편 송부(참가기업→킨텍스)
- ④ 우편 확인 시, 기업이 제출한 기업 계좌로 지원금 입금(킨텍스→참가기업)
 - ※ 지원금 교부까지는 서류 검토 및 지출 행정처리를 위해 1~2개월 소요 예정

5. 문의처

- 용인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 ☎ 031-6193-3173

[첨부1]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p>※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①~⑩번 항목별로 10MB 까지만 시스템상 첨부 가능)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 용인시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후 연락 必 / jina1130@korea.kr]</p>	
필수서류	<p>① 첨부파일 [서식] 참가신청서, 참가계획서, 범위반여부 부존재 약약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p> <p>②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이상 지원 불가능) ※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p> <p>③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아님) 및 상시고용증빙서류(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제출일 기준 60일 이내 ※ 실제 전시회 참가 시의 사업자번호와 다른 경우 선정 후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명 상 도소매, 유통업, 무역업만 있을 경우 선정 제외 (단, 자체 브랜드 생산품이 있는 경우 <u>상표등록증 및 OEM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함.</u>)</p> <p>④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2종 모두 제출) ※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p> <p>⑤ 2026년 해당 국내전시회 신청 증빙서류 <u>[필수서류] 부스임차비 등 청구서 1부 + 비용지출증명(송금확인증 등) 1부 *일부 납부도 가능</u> - 단 공고기간 내 [필수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ex. 전시회 참가 접수 전), 기업 자체 서식에 따라 <u>아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기업 대표 직인 날인)를 제출하여야 함.</u> <u>** “추후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위 [필수서류] 제출”</u></p>
선택서류	<p>⑥ 공장등록증 사본(본사 및 공장 소재지가 모두 용인시일 경우 <u>가점부여</u>) ※ 제출일 기준 60일 이내</p> <p>⑦ 국내외 인증서류 (공고문 6페이지 “<u>국내외 인증</u>” 목록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u>가점부여</u>)</p> <p>⑧ 기술개발 증빙서류 <u>**</u> (공고문 6페이지 “<u>기술개발</u>” 목록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u>가점부여</u>)</p> <p>⑨ 기업인증서(공공인증서) (공고문 7페이지 “<u>기업인증확인</u>” 목록을 참고하여 제출, <u>가점부여</u>)</p> <p>⑩ 2024년, 2025년 수출증명서 (<u>2024년 대비 2025년 수출 감소기업 가점</u>) ※ 한국무역협회(직접), 한국무역통계진흥원(직접), 한국무역정보통신(간접) 발급건</p>

[첨부2] 가점 대상 인증 목록

*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 유효기간 내 항목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비고(유의사항)
국내외 인증	경영체계인증(ISO 9001, ISO14001 등) 인증서 사본	• 해당인증의 종류: 9001,14001,14004, 22000,27001,TL9000K-OHSAS18001 등
	국내품질(규격) 인증서 사본	• [국내규격인증 인정범위] 파일 참조
	해외품질(규격) 인증서 사본	• [해외규격인증 인정범위] 파일 참조
기술 개발	특허증 (국내등록특허 및 해외 등록특허) ※특허 보유 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등록특허는 원문과 번역문(영어가 아닐 시)을 함께 제출 시 인정 • 특허 출원서 제외, 등록특허만 인정 •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상표등록은 제외 • 최대 7건까지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기업일 경우, 특허권자가 법인일 경우만 인정 - 개인사업자일 경우, 특허권자 대표자 개인명의 가능
	기술개발사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및 지방정부 기술개발과제 또는 산학연 협력 사업 참여 • 협약서 사본 또는 공문서 사본만 인정 * `21년 1월 이후 수행실적만 인정, 기술개발과 무관한 협약서는 불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379 /www.rnd.or.kr) * 사후관리 부적정 등으로 인정 취소 된 사본을 제출할 경우사실과 다른 서류제출로 간주되어 평가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효한 인정서만 제출
	NEP(신제품) 인증서 사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를 인증서
	NET(신기술) 인증서 사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를 인증서
	기술관련 상 수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 이내(2021년 이후) 수상한 장관급 이상 표창(상 예) 장영실상, 양백기술상, 다산기술상, 벤처기업상, 특허기술상, 중소기업혁신상, 산업기술혁신대상, 멀티미디어기술대상 등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인증서 사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를 인증서
	경영혁신형기업(MAIN-BIZ) 인증서 사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를 인증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를 인증서 • 발급처 : 소재부품장비 정보포털 (www.sobujang.re.kr)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인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를 인증서

구분	제출서류	비고(유의사항)
기업 인증 (공공 인증)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 '21.2.12 이전 신청기업 :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발급 * '21.2.12 이후 신청기업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에서 발급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의 확인증 발급처 :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처 :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결정통지서 발급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최근 1년 내 발급된 통지서에 한해 인정(공고일 기준)
	청년친화강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발급처 : 청년워크넷(www.work.go.kr)
	경기도 스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서 또는 선정서 또는 선정 확인 공문만 인정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경기도 G-마크 인증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인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인시장 명의 인증서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인시장 명의 인증서

※ 기업인증(공공인증서)은 위 목록에 없는 경우 자체 평가를 통하여 가점 여부 결정